친환경 자원순환정책

1차시

1. 국내의 자원순환 관련법 체계

국내의 자원순환 관련 법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폐기물은 자원순환정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기타 관련 법률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그림3 참조)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칙,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자원순환 촉진시책,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보칙 및 벌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칙,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관한 지도와 감독, 보칙 및 벌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률은 총칙,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산업의 육성, 보칙 및 벌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률은 총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건설폐기물처리업,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공제조합 등의 설립, 보칙 및 벌칙의 순으로 구성된다.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동협약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률은 ·총칙, 폐기물의 수출입 등의 통제 및 관리, 보칙 및 벌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칙,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재활용업의 등록, 보칙 및 벌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의 촉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보칙 및 벌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3. 국내의 자원순환 관련 법 체계

법률명칭	법제의 주요내용	하위규정(고시)
자원순환기본법 2016.5.29. 제정	· 순환자원 인정제 ·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 제품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 폐기물처분부담금제	-
폐기물관리법 1986.12.31 제정	· 폐기물의 분류체계 · 폐기물관리 책무분담 · 폐기물처리/시설기준/ 시후관리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	· 폐기물공정시험방법 ·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92.12.8 제정	· 폐자원원료이용 촉진 · 1회용품의 사용자제 권고 · 예치금/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포장방법 및 재질규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 · 1종/2종 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 철강/건설슬래그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 가전제품포장용완충재감량화지침 · 합성수지재질포장재감량화지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995.1.5 제정	· 주민참여 입지선정 · 주변지역지원등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992.12.8 제정	· 바젤협약의 국내법화 · 유해폐기물수출입절차	· 법률적용대상폐기물품목고시

국내의 대표적인 폐기물 감량화 정책은 1회용품 사용규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폐기물 부담금,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쓰레기종량제,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를 들 수 있다.

2. 폐기물 감량화 정책

2.1 1회용품 사용규제

▌생활수준의 향상과 지나친 편리성 추구 위주의 생활방식 등으로 보편화된 1회용품 사용은 자원낭비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4년 3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원낭비적인 생활이 확산시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컵, 봉투, 쇼핑백 등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1회용품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업종인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의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1회용품의 종류는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과 치약, 1회용 샴푸와 린스이다. 대상업종은 목욕장 및 객실 7실 이상 숙박업,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기타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체육관 등 이다.

▌대상 업종별 규제 내용을 보면 목욕장 및 숙박업은 1회용 면도기, 칫솔과 치약, 샴푸와 린스의 제공이 금지되며,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은 1회용봉투와 쇼핑백 제공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은 1회용 응원용품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의 무상제공 금지의 예외조항은 도소매업 중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사업장은 적용을 예외로 하되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즉,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도소매업 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업 관련 사업장들이 소형매장이 라도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1회용품 사용 규제는 1회용 컵(종이컵 제외)·접시·용기, 봉투·쇼핑백 등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사용되는 1회용품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대상 품목을 달리 두어 규제하고 있으며 주요 규제품목 및 준수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규제는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용억제 품목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하는 무상제공금지 품목으로 나누어 시행 중이다.

▌1회용품 사용자제는 1999년 이전까지는 권고사항이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권고사항이 의무조항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적용하는 대상 업소를 대형업소에서 소형업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등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

표1. 주요 업종별 규제대상 및 준수사항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칫솔.치약, 샴푸.린스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 생선·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등은 제외)
	제작·배포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 선전물(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막을 형성 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및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등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출처: 환경백서, 환경부, 2015

2.2 제품 포장 규제

포장폐기물 규제는 재활용이 용이한 친환경적 재질 대체를 위한 포장 재질 규제와 포장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을 규제하고 있으며, 주요규제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2. 주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구 분	주요 규제기준
포장 재질	- 포장재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는 사용금지 - 합성수지 재질(PVC 등)로 된 포장재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연차별로 줄여나가도록 규제 ·사용금지(PVC) : 계란·메추리알,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등 6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 : 계란판·받침접시, 면류용기 등 4개 제품
포장 방법	- 가공식품 등 단위제품 13개, 1차식품 등 종합제품 10개 등 총 23개 제품에 대하여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포장 공간비율(10%~35%), 포장횟수(2차 이내) 제한

출처: 환경백서, 환경부, 2015

▌그간 제품 보호 목적으로 공기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제품 보호와는 무관하게 과도한 공기주입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제기됨으로써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12.9.28)하여 제과류 공기 충전 제품에 35% 기준을 도입하였다. 또한, 제과류 제품 외에 가공식품 등 음식료품류의 공기 충전 제품도 포장공간비율을 35% 이하로 적용하는 내용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13.9.17)·시행 중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4.10.22)하여 다른 법령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였다. 대상제품이 제품의 특성상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범위를 확대('14.7.14)하고, 연성포장 제품에 대한 측정방법을 새롭게 마련('14.11.28)하는 한편, 티백제품 및 색깔 구분이 필요한 점토류에 대한 포장횟수 적용 합리화('15.2.26) 등 간이측정방법에 대해서도 지속 개선해 왔다.

▌또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484호,'13.5.10)'에 따라 설·추석 명절, 입학·졸업 시즌, 특정기념일 등 다양한 선물세트 제품의 출시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전국적으로 과대포장 여부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2012년 228건, 2013년 19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에 따른 포장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데 노력하였다.

▌2011년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을 체결하여 농산물 포장시 불필요한 띠지.리본장식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2012년 추석명절에는 사과.배 과일세트 준비상품의 40%에서 띠지를 제거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산물에서 축.수산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유통업체를 참여시켜 부속포장재 사용중단, 재활용가능 포장재 사용 등의 기존 협약내용을 강화하여 '1차식품 친환경포장 자발적협약'을 체결('13.9.6)하였다.

▌또한, 친환경포장 설계기술을 개발.보급 및 기업의 자원순환형 포장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포장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한친환경포장 설계기술을 개발하여 1차년도 연구과제인 연포장과 지기류 포장에 대한 친환경포장 설계방법 매뉴얼을 배포·시범사업을 실시하여 CJ 제일제당, 농심이 감량포장 제품을 출시하였다. 또한, 2차년도 연구과제인 용기포장 감량기준을 음료·화장품 업계에 배포하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과 '화장품 용기감량 시범사업 참여협약'을 체결('13.5.15)하여 2014년 말까지 각사 기초화장품 3개 제품 이상 용기부피를 10% 이상 감량·출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먹는샘물 시장의 급성장으로 생수병 제조를 위한 자원의 사용 및 음용 후 버려지는 생수병의 폐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수 제조자와 함께 '생수병 경량화 실천협약서'를 체결('13.11.7)하여 생수병 부피감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차식품 친환경포장 자발적협약' 체결 이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설·추석 명절에 대형마트·백화점·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판매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에서는 띠지·리본 등 불필요한 부속포장재가 사라졌다. 화장품 용기감량 시범사업('13.5~'14.11) 결과, 8개 제품이 평균 20% 이상 포장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대한 성과를 '화장품 포장용기 적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작(1천부), 화장품업계에 배포하여 제품포장시 참조토록 안내하였다. 또한, 2014년 생수병 경량화 사업에 참여한 20개 제품에 대한 포장재 사용량 조사결과, 협약체결시 보다 17.6% 경량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3. 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및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3년에 도입된 후 부과대상, 산출기준 등이 변경되어 왔으며, 2013년 살충제·유독물제품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징수된 폐기물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비용 지원,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등에 사용된다.

▌2008년부터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장관과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에서 정한 해당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달성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2013년의 협약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활용량은 총 243,096톤으로 약 2,525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함에 따라 매립 또는 소각 등으로 처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CO2)를 약 320,961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3. 폐기물부담금 징수 실적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징수액(백만원)	46,476	56,189	60,515	86,995	94,485	114,500	141,670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부과액(백만원)	48,570	58,138	64,452	89,385	97,886	117,442	136,309

출처: 환경백서, 환경부, 2015

앞으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인 플라스틱 중 출고량의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품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4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2013년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12,663톤으로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48,723톤/일)의 약 25.9%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차지하는 점유비율이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29%로 정점을 나타낸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 증가와 에너지·기후변화에의 악영향 저감을 위해 사후처리 위주에서 사전발생 억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단계별·유통원별 특성에 맞는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맞춤형 대책과 더불어 발생억제정책의 실행방안으로 2013년부터 '버린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대상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표4.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 점유비율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활쓰레기 발생량(톤/일)	46,438	48,499	49,902	50,737	50,007	48,398	48,844	50,346	52,072	50,906	49,159	48,934	48,990	48,723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톤/일)	11,434	11,237	11,397	11,398	11,464	12,977	13,372	14,452	15,142	14,118	13,671	13,537	13,209	12,663
점유율(%)	24.6	23.2	22.8	22.5	22.9	26.8	27.4	28.7	29.1	27.7	27.8	27.7	27.0	25.9

출처: 환경백서, 환경부, 2015

2.5 쓰레기종량제

가. 쓰레기 종량제의 개요

▌쓰레기종량제란 쓰레기 없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라는 오염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종전 재산세나 건물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액부과방식의 쓰레기수수료 부과체계를 쓰레기배출량(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량)에 비례하는 부과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2.11. 개정)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현황

▌2013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지역은 전국 3,488개 읍·면·동 중 3,487개 지역으로 전체 행정구역의 99.9%가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20,457천 가구 중 20,437천 가구에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

▌2013년 종량제봉투 제작량은 1,283,492천매로 2012년의 1,069,586천매보다 213,906천매가 증가(20.0%)하였으며, 봉투 제작비용은 71,681백만원으로 2012년 66,694백만원보다4,987백만원 증가(7.5%)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1,072,209천매로 2012년의 909,279천매 보다 162,930천매 증가(17.9%) 하였고, 2013년 판매금액은 525,713백만원으로 2012년도 483,487백만원 보다 42,226백만원 증가(8.7%)하였으며, 가정용 종량제 봉투별 평균 판매가격은 10ℓ(230원/매), 20ℓ(460원/매)로 나타났다.

라. 기타 개선사항

▌청소대행업체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함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이 선별·재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파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센터를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자로 지정하여 재사용 가능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활용센터를 지역 복지사업과 연계·운영하여 중고물품의 수거·운반·선별·수리·리폼·판매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과 함께 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하고,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소외계층 등에 대한 중고물품 무상지원 참여유도와 중고물품 및 사용가능한 물품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환 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2.6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발생원 감축과 재활용 등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노력을 유도하고, 사업자의 폐기물 감량화 실적 분석·평가와 기술진단·지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으로 제도화되어 1996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의 근본 취지는 제품생산 공정 등 발생원에서부터의 폐기물 발생 원천억제 및 재활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 발생과 최종 처분량 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2014년에는 18개 업종, 2,344개소가 자체 감량활동을 전개하였다.

▌동 제도는 한국환경공단을 전산처리 전담기구로 지정하고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사업장의 감량계획 및 감량실적의 전산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사업자의 감량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폐기물감량에 대한 기술진단·지도를 실시하는 폐기물감량 실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계획 및 감량 실적을 평가하여 2014년까지 61개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2003년 5월에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감량화시설로 정의하였다. 2004년 2월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공정개선시설, 폐기물재이용시설,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폐기물감량화시설로 규정하였다. 또한 감량화 대상사업장 규모를 종전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변경하였으며, 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을 폐기물감량평가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매년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 전년도 사업장폐기물 감량실적 평가결과 보고서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14년 이후부터는 지정폐기물의 기준을 연간 100톤으로 확대 적용하여 대상사업장이 증가하였다.

▌한편, 2013년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 운영 결과, 제품생산량은 866,796천톤으로 전년대비 11.0%(86,857천톤) 증가하였으며 폐기물발생량은 43,171천톤으로 전년대비8.7%(3,468천톤) 증가하였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대상업종 추가 및 지정폐기물 100톤으로의 기준 확대 적용에 의한 것이다. 한편, 제품생산 1톤당 발생되는 폐기물량은 49.8㎏/톤으로 전년대비 2.0% 감소되었으며, 발생된 폐기물 중 87.0%(37,571천톤)는 재활용되고, 13.0%(5,599천톤)는 소각·매립 등으로 처리되었다.

▌2005년도에는 '폐기물 감량화 종합정보 홈페이지(www.allbaro.or.kr)' 개설을 통해 폐기물 감량화 정책방향, 감량우수사례, 감량기법 등 정보제공 기능을 활성화 하였고, '폐기물 감량성과 확산대회'를 최초로 개최하여 감량우수사업장 지정현판 수여, 우수사업장정부 포상, 감량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는

'찾아가는 폐기물 감량화 아카데미' 및 감량성과 확산대회,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폐기물감량 정책방향 소개, 업종별 폐기물 감량화 가이드기법 확산·전파 등을 실시하였다. 2007년도부터는 감량성과 확산대회를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으로 시상명칭을 변경하고 정부 포상 범위도 환경부장관표창에서 대통령표창까지로 격상하였다.

표5. 사업장폐기물 감량현황 (단위 : 천톤, kg/톤, %)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실 적	증감(율)
대 상 업 체 수		1,538	2,146	39.5
제 품 생 산 량(천톤)		780,938	866,796	11.0
폐기물발생량(천톤)		39,903	43,171	8.7
- 생산량원단위(kg/톤)		50.8	49.8	△2.0
처리 방법	- 재활용 (천톤,%)	59.4	58.5	△0.9(1.52)
	-소각·매립 등 (천톤, %)	23,023 (76.7)	31,260 (89.4)	8,237(35.78)

※ 생산량 원단위 발생량 : 제품 1톤 생산 시 발생하는 폐기물량(kg)

출처: 환경백서, 환경부, 2015

▌2009년에 처음 선포된 '자원순환의 날(9.6)' 행사를 통해 매년 폐기물감량 우수사업장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한국후지제록스(주)가 대통령 표창을, LG디스플레이(주) 파주사업장 등 7개 사업장은 총리상 및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우수사업장의 감량사례는 '폐기물감량 우수사례집'을 제작·보급하여 사업장의 폐기물감량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자의 감량제도 개선과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에 따른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하여 2014년부터 자원순환성과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